4-2 구조개선전용자금

- □ (대상) 아래의 유형(① ~ ③)에 해당하는 기업
-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(기초진로제시)을 받은 기업 중 '구조개선'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
 - 정책금융기관 등(중진공, 신보, 기보, 테크노파크)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
 - 「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」 또는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 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 -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, 회생,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
 - *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(컨설팅 비용의 10% 및 부가세 10%) 발생
-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'캠코 협업 금융지원' 대상 기업
 -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국세 물납 법인
- - Sales & LeaseBack 참여(선정)기업
- ③ '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'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

※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

- 중진공과 금융기관(협약은행 등)*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 하고,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 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
 - * 기업은행, 수출입은행, 경남은행, 농협은행, 산업은행, 국민은행, iM뱅크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부산은행, 기술보증기금, 지역신용보증재단 등
- ** 지원절차 : 신청 \rightarrow 상담·추천 \rightarrow 사전검토 \rightarrow 진단·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\rightarrow 지원결정 \rightarrow 금 융지원 → 이행점검
- * 프로그램 세부내용 확인 : 중진공 누리집(www.kosmes.or.kr) 「지원사업 -정책자금융자 - 세부사업 - 재도약지원자금 -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-

- ※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
- 융자계획 공고 Ⅲ. 유의사항(융자제한기업) ③항(세금체납기업), ④항(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), ⑪항(부채비율초과기업), ⑪항(한계기업) 적용 예외 (단, ③항(세금체납기업)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·매각의 유예에 한하며, ④항 (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) 예외 적용의 경우는 '회생' 정보 등록기업에 한함)

□ (융자방식) 직접대출

□ 대출조건

| 구분 | | 대출 조건 | |
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|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|
| 대출 한도 | 시설 | - | 연간 60억원 이내 |
| | 운전 | 3년간 10억원 이내 | 3년간 15억원 이내(연 10억원 이내) |
| 대출 기간 | 시설 | - |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|
| | 운전 |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 |
| 대출금리 |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 2.5%(고정) |